의안번호	제 660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660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」,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"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"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

○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('18. 1. 1. ~ '22. 12. 31.)

○ 위　　치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內)

○ 수탁기관 :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

※ 現 수탁기관 : (사)한어총 충북어린이집연합회('15. 1. 1. ~ '17. 12. 31.)

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○ 위탁 주요사무

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-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-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-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
-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
-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-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現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

○ 센터 설립 경과

- '03. 6. 9. :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
- '13. 12. 5. :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

○ 수 탁 기 관 : (사)한어총 충북어린이집연합회('15. 1. 1. ~ '17. 12. 31.)

○ 사 업 비('17년) : 31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

○ 기관위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內)

○ 조직・인력 : 11명(센터장 1, 보육전문요원 4, 대체교사관리자 1, 전문상담요원 1, 시간제보육관리자 1, 행정원 1, 기타 2)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○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

○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

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

○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

○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-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-

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보건복지국
복지정책과

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❖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을 선정·운영하고자 함

- 現 수탁기관 : (사)한어총 충북어린이집연합회 ('15. 1. 1.~'17. 12. 31.) -

Ⅰ 관련근거

○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,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3

○ 충청북도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,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

Ⅱ 추진방침

○ **공개모집(민간 위탁)을 통해 공평하고 투명한 보육의 전문기관 선정**

○ 민간위탁 동의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 **사전절차 이행 철저**

○ 충북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**기관 역량(성과 등) 면밀한 검토** 분석

Ⅲ 위탁개요

○ 시 설 명 :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

○ 기　　간 : **'18. 1. 1. ~ '22. 12. 31.(5년)**

※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('17. 7월) : 위탁기간(3년 → 5년)

○ 방　　법 : **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**

○ 사업비('17년) : 310백만원(국·도비 각 50%)　* 매년 변동

○ 위탁사무

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-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-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-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
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
-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
-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-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現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

○ 설 립 일 : '03. 6. 9. (보육정보센터 → 육아종합지원센터 : '13.12.5)
○ 면　　적 : 210.52㎡(사무실, 상담실, 장난감도서관 등)
○ 소 재 지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10호)
○ 직원현황 : 11명(센터장 1, 보육전문요원 4, 기타 6)
○ 그간 위탁현황
- 1~3회('03. 6. 9. ~ '11. 12. 31.) / 충청북도보육시설연합회
- 4~5회('12. 1. 1. ~ **'17. 12. 31.) / (사)한어총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**

Ⅳ 추진계획

① 의회동의 : 9~10월(임시 회기중)

○ 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

<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> ③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----- **자치사무를 민간위탁**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**충청북도의회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수탁 공고 : '17. 11월중 (15일간)

○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
○ 신청자격(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)

<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> ① ----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○ 운영조건(영유아보육법 준수,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)

센터장 자격

-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센터 대표, 업무총괄, 상근 원칙

수탁조건

- 관계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
- 사업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의 수탁기관 부담
- 현직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

○ 선정방법 :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심사・결정

③ 수탁 심사 : '17. 12월

○ **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**

- 구성인원 : 15명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○ 심사항목

- 배점(100점) : 운영계획(30), 대표·센터장심사(30), 운영실적(10), 공신력(20), 지역기여도(10)

○ 심사방법 : 심사기준에 의해 서류, 면접심사

- 위탁기관 및 센터장(예정자)는 운영계획 및 소견 발표

○ 결정방법 :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(단체)를 위탁운영자로 선정(평균점수는 70점 이상)

④ 계약체결 등 : '17. 12월

○ 내 용 :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・인수

Ⅴ 추진계획

- ○ 민간위탁 동의(의회) : ‘17. 9~10월
- ○ 수탁기관 선정 공고 : ‘17. 11월
- ○ 선정위원회(보육정책위원회) 심의 : ‘17. 12월
- ○ 계약 체결 및 공증 : ‘17. 12월
- ○ 위・수탁사무 개시 : ‘18. 1. 1.

붙 임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 1부

붙 임 **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**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
3.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4.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
5.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

제1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)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(常勤)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1.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.

1.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**정부출연연구기관**

2. **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**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**대학 또는 전문대학**

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대표자의 경력사항
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법인·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6.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7.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삭제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6조(기능)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**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**
3.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
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·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 할 수 있다.

③ **위탁기간은 5년 이내**로 하되 **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.**

④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삭제

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**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**한다. <신설 2017. 7. 7>

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**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다만,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**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